의안번호	2205569
의 뢰 인	최민희 의원
회 답 일	2024. 11. 22.
추계번호	24B5091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7,500만원(연평균 3,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24	24	24	24	24	120	24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11	11	11	11	11	55	11
계	35	35	35	35	35	175	35

주: 1.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음.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1항)	의무규정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제2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12항)	
3	안 제11조(전문위원회 등)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는 연구・자문・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이하 “신뢰위원회”라 한다)를 둠(제2항) 1. 인공지능윤리의 준수・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2. 인공지능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지원 및 관련 연구 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4. 권고등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사전검토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4	안 제12조(국가인공지능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이하 “국가인공지능센터”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그 밖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3조(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1항)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 3.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5.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의 지원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3.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함.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7	안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이하 "학습용데이터"라 한다)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6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을 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9	안 제17조(창업의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0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10	안 제18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19조(제도개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2	안 제20조(전문인력의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제2항) 1.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3	안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제3항)	
14	안 제22조(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5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공표할 수 있음(제1항) 1.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 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 등을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의 공헌을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한 사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항 각 호의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 및 홍보・교육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6	안 제26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27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인증 활동(이하 “검・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4. 검・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8	안 제29조(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9	안 제32조(시정조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및 운영자들에 대하여 신뢰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4항)	
20	안 제33조(인권영향평가)	공공기관(고위험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 및 민간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 운영자는 자신이 개발 또는 운영하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인권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그 밖에 인권영향평가의 방법・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1	안 제34조(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4항)	
22	안 제35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23	안 제36조(인공지능 이해력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공자, 운영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인공지능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4	안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1. 제13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15조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및 유통ㆍ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ㆍ지원 및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제17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27조제2항에 따른 검ㆍ인증등 관련 지원 6.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	
3	안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	
4	안 제16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	-	
5	안 제18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	
6	안 제20조(전문인력의 확보)	-	
7	안 제25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	-	
8	안 제26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	
9	안 제27조(인공지능 신뢰성 검ㆍ인증 지원 등)	-	
10	안 제35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	
11	안 제7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계획 마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기관이 민관 의견수렴을 통해 직접 작성할 예정으로, 연구용역 등 별도의 예산 편성 불필요
12	안 제19조(제도개선 등)	-	미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정안의 제도개선은 정부의 행정적 사항에 해당하여 별도의 예산 편성 불필요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3	안 제12조(국가인공지능센터)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
14	안 제17조(창업의 활성화)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기획이 아직 없는 상황임
15	안 제21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16	안 제22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집적단지 대상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7	안 제29조(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위험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사례수집 및 연구 등을 진행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례수집 및 연구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18	안 제32조(시정조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위험 인공지능 제공자 및 운영자들에 대하여 신뢰성 확보조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등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신뢰성 확보조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위험요인 분석 등을 위한 적합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조사 및 평가 주기,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19	안 제33조(인권영향평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고위험 인공지능의 최초 개발 또는 운영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개발한 고위험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고, 해당 인권영향평가의 재정소요를 공공기관의 자체 경비를 충당할지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
20	안 제34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정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21	안 제36조(인공지능 이해력 교육)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을 제품이나 서비스로 제공하는 자 및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등의 인공지능 이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는 교육 및 홍보 주기, 방법,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22	안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업무위탁은 개별 사업에 따른 간접비로 책정될 예정이며, 어떤 사업이 위탁될지 계획이 미수립된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움
23	안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4	안 제11조(전문위원회 등)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td><td><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신뢰성기반조성)</td><td>-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차별·편향 심화, 사생활 침해 등)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td><td>3,523</td></tr>
</table></td></tr>
<tr><td>안 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td><td><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신뢰성기반조성) 內 AI 표준화 과제</td><td>-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차별·편향 심화, 사생활 침해 등)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인공지능기술 표준화 과제)</td><td>200</td></tr>
</table></td></tr>
<tr><td>안 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td><td><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초거대AI확산생태계조성)</td><td>글로벌 빅테크들의 초거대AI 독점에 국내 스타트업 등이 대응할 수 있도록 초거대AI 언어데이터 및 AI 데이터 개방·활용 인프라 지원</td><td>55,800</td></tr>
</table></td></tr>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16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바우처 지원)</td><td>기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td><td>42,500</td></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고성능 컴퓨팅 지원)</td><td>인공지능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학습용 및 추론용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임차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에 제공</td><td>13,200</td></tr>
</table>
</td></tr>
<tr><td>안 제18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td><td>초거대 AI 기반의 법률 전문 서비스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률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저비용·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td><td>7,500</td></tr>
<tr><td>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td><td>의료 전문영역에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 개발·실증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를 통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td><td>8,000</td></tr>
<tr><td>AI 심리케어·돌봄지원</td><td>AI를 활용한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실증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수준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td><td>6,000</td></tr>
<tr><td>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td><td>초거대 AI 기반의 영상 콘텐츠 등 창작 활동 서비스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초거대 AI의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한류 미디어·콘텐츠 분야 경쟁력 강화</td><td>9,000</td></tr>
<tr><td>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td><td>초거대 AI기반의 논문작성·검토 연구보조 등 서비스의 개발·실증을 지원하여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술·연구활동의 효율성 증대</td><td>3,000</td></tr>
<tr><td>부처협업기반 AI확산</td><td>국민 체감도가 높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인공지능 서비스를 부처 협력을 통해 도입·확산하여 공공부문 AI융합 가속화</td><td>24,000</td></tr>
<tr><td>AI정밀의료SW 선도기반조성</td><td>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지원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육성</td><td>19,838</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20조(전문인력의 확보)</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td><td>AI·AI반도체·융합보안 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산·학 공동 연구 교육 및 글로벌 협력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석·박사 인재양성</td><td>20,000</td></tr>
<tr><td>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td><td>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양성</td><td>10,500</td></tr>
<tr><td>생성AI선도인재양성</td><td>국내 대학과 국내·외 생성AI 선도기술 보유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기반 新서비스 모델 발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td><td>3,500</td></tr>
</table>
</td></tr>
<tr><td>안 제25조(인공지능 윤리원칙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신뢰성기반조성)</td><td>-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차별·편향 심화, 사생활 침해 등)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td><td>3,523</td></tr>
</table>
</td></tr>
<tr><td>안 제26조(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신뢰성기반조성)</td><td>-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차별·편향 심화, 사생활 침해 등)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td><td>3,523</td></tr>
</table>
</td></tr>
<tr><td>안 제27조(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신뢰성기반조성)內 민간AI 신뢰성시범인증 과제</td><td>-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차별·편향 심화, 사생활 침해 등)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 - 민간 AI 신뢰성 시범인증</td><td>60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조·항(조제목)</th><th>현행 사업(2024년)</th></tr>
<tr><td>안 제35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td><td>
<table>
<tr><th>사업</th><th>개요</th><th>’24예산</th></tr>
<tr><td>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산업생태계기반마련)</td><td>AI통계·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AI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AI관련 대국민 정책 신뢰 확산에 기여</td><td>1,400</td></tr>
</table>
</td></tr>
</tabl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8조의 인공지능위원회, 안 제11조의 전문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인공지능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수가 민간위원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2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1)]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전문위원회 등) 인공지능위원회에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회별로 6명의 민간위원을 배정하여 연구·자문·검토 등을 연 2회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2,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2,400만원)

- 민간위원은 20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표 3]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위원회 구성·운영	24	24	24	24	24	120	24

주: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전문위원회 등(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5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100만원)

-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민간위원은 6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2회로 가정함

[표 4] 인공지능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11	11	11	11	11	55	11

주: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제정안 중 현재 수행 중인 재정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현행 AI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사업개요
AI정밀의료SW선도기반조성	19,838	· 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 지원 및 정밀의료 SW 산업 육성지원
DB산업육성(정보화)	2,621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및 데이터 기업 역량 강화
AI 미디어 · 문화 향유 확산	9,000	· 영상, 이미지, 음원 생성 및 분석 등 미디어·문화 분야에 초거대 AI를 활용한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7,500	· 초거대 AI 기반 법률서비스 개발을 통해 법률 전문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 분야 AI 일상화 촉진
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	7,800	· 연구자의 학술활동(논문 작성 등) 등을 보조하는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8,000	· 건강상담, 질병발병 가능성 예측 등 선제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수명 향상 지원
AI 심리케어•돌봄지원	6,000	· 일상생활 속 부담 없는 정서장애 케어 지원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지원	4,000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 실증 지원 및 생활 밀착형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확산 지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확산 환경 조성	4,000	· 초거대 AI 인프라 구성하여 융합플랫폼 실증 및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9,350	· AI기반 농기계 자율작업 및 정밀농업 기술 개발·실증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10,000	· 제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 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5,000	· 지역 의료기기 제조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생태계 저변확대 및 활성화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	40,700	· 광주 AI집적단지 조성, AI인력양성(AI융합대학, 고급인재), 창업 지원 등
K-Health국민의료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11,000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으로 데이터·AI융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
데이터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6,000	·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실증 및 사업화 등을 지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사업개요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 강화	61,390	·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데이터경제 가속화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86,801	· 클라우드 이용확산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
데이터활용확산 정책지원	3,639	·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데이터 품질 인증·가치평가·분쟁조정·표준계약서 등 제도 시행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25,222	·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수집·활용 활성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24,000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AI융합 지원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119,623	· AI바우처,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지원 및 AI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
SaaS혁신펀드	20,000	· 혁신적인 SaaS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추진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조성	2,804	·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활용하고 데이터 산업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지원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R&D)	1,180	· 다양한 분야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AI+X R&D 활성화 및 초기시장 창출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R&D)	7,000	· AI 기반의 공공·산업 등의 난제 해결을 위해 도메인 전문가와 AI 연구자의 협업 기반 AI 원천기술 확보 R&D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R&D)	45,075	· AI 기술 한계 극복 및 인간이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구현으로 차세대 AI 핵심원천 기술 확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R&D)	1,400	· AI 분야 공개 경진대회 기반의 경쟁형 R&D 추진 및 우수팀의 후속연구 지원을 통한 AI 기반 확산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480	· 한국어 기반 사전학습을 통한 한국어 언어모델 구축 및 텍스트·이미지·비디오 생성·변환 등 멀티모달 기술개발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개발(R&D)	7,937	·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AI 의료 SW 개발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R&D)	4,000	· 생성AI가 갖는 편향성·환각현상 등 한계극복을 위한 차세대 생성AI기술 개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	2,070	·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R&D를 통한 산업 생산성 혁신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新제품·서비스 창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